

14-다. 교지(校地) 확보 현황

■ 공시지침

【공시기관】 : 대학

【공시시기】 : 2023년 10월

【공시내용】 : 2023년 교지(校地) 확보 현황

【공시양식】 : 다음 양식 적용(자료기준일: 2023. 4. 1.)

기준연도	기준면적(㎡)		보유면적(㎡)(C)	교지확보율(%)	
	입학정원 기준(A)	재학생 기준(B)		입학정원 기준(C/A×100)	재학생 기준(C/B×100)

※ 사이버대학은 본 항목의 공시대상에서 제외

■ 작성지침

【교지(校地)】 : 「대학설립·운영규정」 제5조에 의하여 대학이 교육·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지 중 교지경계선 내 및 교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최단거리 20km 이내 이거나 동일 시·군·구 내에 위치한 교육연구용 토지

※ 제외: 농장, 학술림, 사육장, 목장, 양식장, 어장, 약초원 등 실습지 및 「대학설립·운영규정」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용지

【기준면적】 : 「대학설립·운영규정」 [별표 4]에 의한 교지(실습지를 제외한) 기준면적

학생정원	400명 이하	400명 초과~1,000명 미만	1,000명 이상
면적	교사건축면적이상	교사기준면적이상	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

※ 예외: 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 변경하는 경우 학생정원에 상관없이 교사건축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함. 다만,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하여 교사로 사용하는 경우 교지를 확보할 필요 없음

【입학정원기준】 : 정원내 학부(계열별 학과 주·야별 입학정원 중 최댓값 × 수업연한(2년, 3년, 4년, 5년 이상)) + 정원내 대학원(주간 입학정원 × 수업연한)

※ 입학정원기준 시설정원 산정 시, 계열구분이 어려운 학과의 입학정원은 해당학과에 입학한 총 정원의 계열이 최초로 구분되는 학년의 정원내 재학생 비율로 안분(소수점은 첫째자리에서 반올림)

<대학, 전문대학>

※ 학생정원 산정 시, '결손인원' 또는 '편입학여석' 활용을 통한 '첨단학과 증원 인원'(총 정원범위 내 자체조정, 또는 국립대 증원을 통한 첨단학과 정원 증원분은 입학정원에 포함) 및 「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」에 따른 '모집유보 인원'은 제외하여 산출

- ※ 제외해야 하는 첨단학과 결손인원/편입학여석 활용분
 - 결손인원 활용 방식: 첨단학과 정원 증원을 위해 활용한 결손인원에서 타 학과 누적 감축정원을 뺀 값
 - 편입학 여석 활용 방식: 편입학 여석을 활용하여 증원한 첨단학과 정원
 - * 결손인원 활용과 편입학 여석 활용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, 결손인원 활용분과 편입학 여석 활용분을 합산

<대학원>

- ※ 학생정원 산정 시, '결손인원' 활용을 통한 '첨단학과 증원 인원' 및 「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」에 따른 '모집유보 인원'은 제외하여 산출
- ※ 제외해야 하는 첨단학과 결손인원
 - 타 학과 정원 감축형: 첨단학과 정원에서 타 학과 누적 감축정원을 뺀 값(즉, 미감축 정원)
 - 타 학과 정원 유지형: 첨단학과 정원
 - * 타 학과 정원 감축형과 유지형이 혼재하는 경우, 각각의 활용분을 합산

참고

- 2005. 10. 25 이전 설립 대학 중 본교·분교 및 캠퍼스 상관없이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400명(대학원대학 100명) 미만인 경우 그 정원을 400명으로 환산하여 입력
- 2005. 10. 25 이후 설립 대학 중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1,000명(대학원대학 200명) 미만인 경우 그 정원을 1,000명(대학원대학 200명)으로 환산하여 입력. 단, 대학의 일부를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는 경우, 학생정원이 400명(대학원대학 200명) 미만인 경우 그 정원을 400명(대학원대학 200명)으로 환산하여 입력

【재학생기준】 : 정원내·외(계열별, 학년별, 주·야별 최댓값) + 정원내·외 대학원(주간 재학생)

- ※ 제외: 계약학과 재학생,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특별전형 재학생
- ※ 「고등교육법」 제23조5제3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재학생에 포함시킬 수 없음

【보유면적】 : 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교지경계선 내 및 교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최단거리 20km 이내 이거나 동일 시·군·구 내의 교육·연구용 토지(2km 이내의 경우는 시설결정·미결정 모두 포함하고, 2km 초과인 경우는 시설결정만 포함)

【교지확보율(%)】 : (보유면적/기준면적) × 100

■ 참고사항

- 교지(校地) 확보 현황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
-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